

이 사 회 의 사 록

회 의 일 시 : 2017년 12월 14일 15시

회 의 장 소 : 법인 2층 회의실

이 사 정 수 : 7명

재 적 이 사 : 7명

출 석 이 사 : 7명(임상엽, 백남해, 이명자, 신명균, 박성호, 서인교, 임효진)

대표이사 임상엽은 위와 같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고하고 개회를 선언하다.

전차 회의록 낭독에 이어 다음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.

제1호 의안 법인 사무국 및 산하시설 추가경정예산(안) 심의의 건

법인 사무국, 고성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, 고성군장애인복지센터, 사랑의집, 영보직업재활센터, 천사의집, 한울타리장애인그룹홈, 합천군장애인복지센터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(안)의 사유 등을 검토한 바,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추가경정예산을 승인하다.

[추가경정예산]

(단위:천원)

시설명	세입			세출			비고
	본예산	추경예산	증감	본예산	추경예산	증감	
사무국	252,114	259,064	6,950	252,114	259,064	6,950	
고성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	79,428	79,428	-	79,428	79,428	-	
고성군장애인복지센터	215,994	213,020	-2,974	215,994	213,020	-2,974	
사랑의집	442,454	446,075	3,621	442,454	446,075	3,621	
영보직업재활센터	408,545	406,095	-2,450	408,545	406,095	-2,450	
천사의집	1,924,831	1,949,881	25,050	1,924,831	1,949,881	25,050	
한울타리장애인그룹홈	48,800	55,260	6,460	48,800	55,260	6,460	
합천군장애인복지센터	217,228	213,786	-3,442	217,228	213,786	-3,442	

제2호 의안 법인 사무국 및 산하시설 2018년 예산(안) 심의의 건

법인 사무국, 고성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, 고성군장애인복지센터, 사랑의집, 영보직업재활센터, 천사의집, 한울타리장애인그룹홈, 합천군장애인복지센터가 제출한 2018년 예산(안)을 검토한 바,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2018년 예산을 승인하다.

[2018년 예산]

(단위:천원)

시설명	세입			세출			비고
	본예산	추경예산	증감	본예산	추경예산	증감	
사무국	259,064	253,518	-5,546	259,064	253,518	-5,546	
고성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	79,428	83,010	3,582	79,428	83,010	3,582	
고성군장애인복지센터	213,020	244,240	31,220	213,020	244,240	31,220	
사랑의집	446,075	431,859	-14,216	446,075	431,859	-14,216	
영보직업재활센터	406,095	451,594	45,499	406,095	451,594	45,499	

천사의집	1,949,881	2,053,691	103,810	1,949,881	2,053,691	103,810	
한울타리장애인그룹홈	55,260	53,000	-2,260	55,260	53,000	-2,260	
합천군장애인복지센터	213,786	222,211	8,425	213,786	222,211	8,425	

제3호 의안 천사의집 운영규정 개정(안) 심의의 건

천사의집 운영규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 바,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운영규정 개정을 승인하다.

[천사의집 운영규정 개정(안) 대비표]

개정 전	개정 후	변경사유
제3조 (조직구성) 본 시설은 원장, 사무국장을 두고 그 사무의 분장을 위하여 다음의 부서를 둔다. 1. 사무국 2. 사회재활팀 3. 생활재활팀 4. 의료재활팀 5. 영양급식팀 본 시설 특성에 따른 효율적·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조직구성도는「별지 1호」와 같다.	제3조 (조직구성) 본 시설은 원장, 사무국장을 두고 그 사무의 분장을 위하여 다음의 부서를 둔다. 1. 사업지원팀 2. 거주지원팀 (팀은 1, 2팀으로 나눌 수 있다) 3. 의료재활팀 4. 영양급식팀 본 시설 특성에 따른 효율적·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조직구성도는「별지 1호」와 같다.	조직 구성 변경
제4조 (보수) ① 시설 직원의 보수는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구분하고 월급제로 한다. ② 월 20일 이상 근무시 월급전액을 지급하고, 그 이하일 때에는 일할 계산한다. ③ 직원의 최종 3개월 분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여하한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.	제4조 (보수) ① 직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 거주시설 사업안내에 따른다. ② 직원의 최종 3개월 분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여하한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.	보수 지급 기준 변경
제9조 (명절 및 하계휴가비) ① 시설은 설, 추석의 명절에 소정의 휴가비를 지급한다 ② 시설은 하계휴가 기간 동안 직원 복리를 위해 소정의 하계휴가비를 지급한다. ③ 명절 및 하계 휴가비는 직원의 근무태도를 인사위원회에서 평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. ④ 차등하여 지급할 시 그 방법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	제9조 (하계휴가비) 시설은 하계휴가 기간 동안 직원 복리를 위해 소정의 하계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.	명절휴가 비 삭제 및 하계휴가 비 지급 기준 의무 변경
제11조 (인정경력 및 호봉획정) 인정경력 및 호봉획정은 인사규정 제6조, 제7조, 제9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.	제11조 (인정경력 및 호봉획정) 인정경력 및 호봉획정은 보건복지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.	경력 인정방법 변경
제9조 (시내출장 여비) ① 시내 출장의 경우 우선적으로 공용차량을 이용하도록 하고 대중교통 이용시 지출되는 교통비 및 식비에 대해 증빙서에 의해 실비 제공하고,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 일비 20,000원을 지급하고 월 총액 60,000원을 넘지 못한다. ② 공용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, 통행료는 증빙서에 의해 지급한다. ③ 제 1항에서 시내출장이라 함은 시설 기준으로 왕복 120km 미만의 구간을 말한다.	제9조 (시내출장 여비) 시내 출장의 경우 우선적으로 공용차량을 이용하도록 하고 대중교통 이용시 지출되는 교통비 및 식비에 대해 증빙서에 의해 실비 제공한다. ② 세부지침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시설에서 별도로 정한 지침에 따른다.	여비지급 기준변경
제2조 (입소) ② 이용자의 입소는 시설의 정원인 60명을 초과하지 못한다. 단,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원장의 승낙을 득 한 후 정원의 10%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 입소할 수 있다.	제2조 (입소) ② 이용자의 입소 정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	입소정원 기준변경
제2조 (입사자격 및 이용료) 기숙사의 입사는 당 시설의 수녀님에게만 허용되고 있으	제2조 (입사자격 및 이용료) 기숙사의 입사는 당 시설의 직원에게만 허용되	입사자격 변경

나 입사를 희망하는 직원이 있을 시 숙소 및 제반여건이 충족된 후 입사를 할 수 있다. 입사를 희망하는 직원은 소정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	며 입사를 희망하는 직원은 소정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	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의장은 이상으로서 회의의 목적인 의안 전부를 심의 종료하였으므로 폐회를 선언하다.
(회의 종료 시간 : 16시 30분)

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아래에 날인하다.

2017년 12월 14일

사회복지법인 천주교마산교구사회복지회

대표이사 임 상



이 사 백 남



이 사 이 명



이 사 신 명



이 사 박 성



이 사 서 인



이 사 임 효

